

보도자료

2010년 9월 24일(금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
가.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과장(2770) 나. 시장조사과 이창희과장(2630)
다. 방송채널정책과 김영관과장(2470)
[보고안건]
가. 미디어기반정책과 장봉진과장(1360)

2010년 제58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

[의결안건]

가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

○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

나. 이통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○ SK텔레콤(주), (주)KT, 舊 (주)LG텔레콤(現 (주)LG U+)가 '09년 상반기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(안)을 심의하여 의결함

다. 2011년도 공익채널선정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 (첨부 1 참조)

○ 방송법 제70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의거 공익채널을 선정하기 위한 기본계획(안)을 심의하여 의결함

- 공익채널 방송분야를 3개로 하고, 방송분야별 채널 수는 3개 이내로 선정 등

< 공익성 방송분야 >

방송분야	전문편성내용
사회 복지	○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이익실현에 불리한 사회적 소수를 대변하고 관련 정보 제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○저출산·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육아·어린이, 노인복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
과학·문화 진흥	○순수예술, 공연예술, 예술교육 등 예술에 대한 이해와 진흥을 도모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○이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기초과학, 기계전자, 생명과학, 정보통신기술, 환경, 저탄소 녹색성장 등 과학·기술 분야의 이해 및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
교육 지원	○어린이·청소년의 공교육 보완을 통해 과외대체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, 지역·계층간 교육기회 격차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○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, 직업교육, 인터넷 윤리교육 등 방송의 사회 교육 기능을 신장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

[보고안전]

가. 「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」 (고시) 제정안에 관한 사항
(첨부 2 참조)

- 방송법 제69조의2(시청점유율 제한)제3항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심의한 「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」 (고시안)을 보고함
- 시청점유율 산정대상 및 산정방식,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방법,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방식, 매체교환율 등

〈 첨부 1 〉

2011년도 공익채널선정 기본계획(안) 주요내용

□ 공익채널 방송분야를 3개로 하고 방송분야별 채널 수는 3개 이내로 선정

□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 계획

-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계획을 근거로 제출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함
- 공익채널 선정여부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함

※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며 분야별 전문가 7인(심사위원장 포함)으로 구성

□ 심사항목 및 배점

심사항목	배점
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	200
공정성·공익성 및 실현가능성	300
운영계획의 적정성	300
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	100
시청자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	100
합 계	1,000

□ 선정기준

- 심사결과 총점 65% 이상, 심사항목별 배점의 40% 이상 획득한 사업자 중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

□ 추진일정

- 공익채널 선정신청서 접수 : 9.28 ~ 9.30
- 공익채널 선정심사 : 11월 초
- 공익채널 선정결과 위원회 의결 및 결과 발표 : 11월 초(예정)

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(고시안) 주요내용

□ 시청점유율 산정대상

- (전체 텔레비전 방송) 방송사업자와 IPTV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채널
- (특정 방송채널)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하되,
 - 그 텔레비전 방송채널이 IPTV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채널을 포함

※ 다만,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시청점유율 조사가 불가능한 텔레비전 방송 채널은 산정 제외 가능

□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

- (구독률 산정 방법)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과 동일하게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전체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산정

□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

- (환산 방식) 일간신문 구독률에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특성, 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체교환율을 곱한 후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시청률의 합으로 나누어 시청점유율로 환산

□ 매체교환율

- (산정 기준)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함
 - 이 경우 매체영향력은 각 매체의 이용자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측정하며, 측정 결과값을 산술 평균함

- **(이용자 측면)**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에 대한 시사정보 이용률, 시사정보 이용시간, 매체 의존도 등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며, 각각의 측정 결과 값을 산술 평균함
- **(시장 측면)**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광고매출 자료를 조사하여 측정
- **(설문조사 등)** 이용자와 시장에 대한 조사시 필요한 조사기준·조사방법·조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미디어위가 정함
- **(매체교환율 공표)** 매체교환율은 매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

※ 2011년도 매체교환율은 2010년에 공표한 매체교환율을 이용하도록 부칙으로 규정

□ 시청률의 합

- **(산정기준)** 시청률의 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의 직전년도 연평균 시청률 자료를 기준으로 함

※ 방통위가 조사기관을 지정하기 이전의 시청률의 합은 국내 시청률 조사기관의 자료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

□ 시청점유율 조사

- **(기본계획)** 방통위는 조사채널, 조사방법, 조사규모 등을 포함하는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미디어위의 심의를 거쳐 수립
- **(조사원칙)** 미디어위는 표본의 대표성, 조사대상의 적정성, 조사방법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청점유율을 조사

□ 시청점유율 산정기간

- **(산정기간)** 시청점유율은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년도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, 불가피한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

※ 1)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, 허가승인 등의 심사에 반영하는 경우 등
 2) 산정기간의 경우, 2011년 6월 30일까지 산정하는 시청점유율은 방통위가 지정한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이 조사하는 기간을 산정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

□ 시청점유율 산정 방법

○ (시청점유율 산정) 시청점유율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합산

1. 해당 방송사업자의 본인 및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: 전부 반영
2.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: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반영

□ 일간신문 구독률 합산

○ (일간신문 구독률 합산) 일간신문 구독률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합산

1. 해당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: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전부 반영
2.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: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반영

□ 자료제출

- (방송사업자)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(주주구성, 특수관계자 현황 등)를 제출하도록 규정
- (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)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(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)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,
 - 일간신문 구독률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(전체발행부수 및 유통판매부수 등)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

□ 향후 일정(안)

- 2010. 10월중 방통위,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(고시안) 의결